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오현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263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03월 31일

발 의 자:오현정 의원(1명)

찬 성 자:김재형, 김태호, 김호평,

송정빈, 이광성, 이승미, 장상기, 최웅식, 황인구

의원(9명)

1. 제안이유

○ 현재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그 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, 수도계량기 이상 유무와 관계 없이 시험비용과 재설치에 따른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시장이 부담하고 있음.

그러나 수도사용자등의 요청에 따라 시험하는 수도계량기의(대형) 경우 약 84%가 정상으로 판정되고 있고, 무분별한 시험요청으로 인 해 만기 및 고장 교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.

이에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의 비용을 시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수도계량기 시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사례를 방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수도계량기 시험결과 정상인 경우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제38조(공급규정)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 제목 "(계량기의 시험)"을 "(수도계량기의 시험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20조(계량기의 시	험) ①~②	(생 략)	제20조 <u>(수도계량기의 시험)</u> ① ~ ② (현행 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		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험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. 다만,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
<u><신 설></u>			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④ 제3항의 시험비용과 수도계량기 대금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